

#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지역정보화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도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협의회는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둔다.

##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구성)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 ①협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 또는 정보화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의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임자 또는 대리인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위원소속기관의 정보화(통신)담당관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협의회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직원을 둔다.

②간사와 직원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나) 자치단체 공통S/W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다) 자치단체 개발 우수S/W 확산보급·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라)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마) ASP(공동서비스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 바)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사)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정책 개선사항 합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되는 사업 중 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협의회 결정사항의 집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②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3장 회의운영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상정된 안건을 취합하여 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협의회사무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협의안건의 합의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조정요청 및 조정의 효력)** ①안건을 상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거 조정된 사항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장 사무위탁 및 비용분담

**제13조(사무위탁)** ①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9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사무위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사무위탁의 구체적 범위는 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비용분담)** ①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가 분담한다.

## 제5장 기 타

**제15조(회계)** ①협의회 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년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간사는 매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으로 편성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간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결산을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약의 해석 등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143조(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제14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②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16, 99·8·31>

③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